



## < 수시 공시 >

2012.1.30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, 당 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1. 공시 사유 : 소규모펀드(1개월)

2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1) 발생일자 : 2012.1.27(금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1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 (채권혼합)A형	2,062,366,453	2,019,282,352	979.11
2	신영밸류우선주30증권자투자신탁 (채권혼합)C형	2,017,951,697	1,971,679,693	977.07
3	신영코리아밸류3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2,891,656,960	2,870,271,657	992.60

2) 발생일자 : 2012.1.28(토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1	신영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1,074,836,006	1,089,683,762	1013.81
2	신영더블플러스안정형증권투자회사9호 (채권혼합)	3,075,398,164	3,128,912,999	1017.40

3) 발생일자 : 2012.1.29(일)

구분	집합투자기구 명칭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1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 [주식혼합]A형	1,079,990,771	1,075,376,588	995.73
2	신영마라톤분할매수증권자투자신탁2호 [주식혼합]A형	1,079,990,771	1,075,376,588	995.73
3	신영마라톤분할적립증권자투자신탁 [주식혼합]A형	2,586,164,656	2,591,744,344	1002.16

3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 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